

나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기준

1) 시설 면적

-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m²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함
 - ‘활동공간’이란 10시 ~ 17시 동안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용공간을 의미함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심신안정실은 공간 면적 6.6m² 이상으로 갖추어야 함

2) 시설 설치

-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 제공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권장함
 - 2층 이상에 위치한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기준 >

구분	면적	내용
활동공간	4인당 33m ² 이상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심신안정실	6.6m ² 이상	- 도전행동 발생 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공간
사무실	-	- 활동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는 겸용 가능
기타 공간	-	- 복도, 보일러실, 창고, 화장실 등 ※ (화장실) · 내부 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나, 여건상 외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과 가까운 프로그램실에 활동공간을 두어야 함 ·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3) 시설 공간

- (활동공간) 활동공간은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구성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하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구성해야 함

참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 구성 원칙

- 안전을 위한 장비 구비 및 설치 필수(소화기, 문 잠금장치, 손 끼임 방지장치 등)
- 벽 및 기둥의 모서리에 충돌 방지용 안전장치 부착
- 주요 활동공간에 CCTV 설치
- 창문은 도난, 사고, 이탈 등의 문제행동에 대비한 보호장치 및 강화유리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편적으로 10~15cm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함
- 비상약품(밴드, 소독용품, 소화제 등) 및 간이 의료기구(혈압기, 체온계 등) 구비
- 바닥은 온돌바닥을 권고하나, 필요시 딱딱하지 않은 매트 사용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지벽 설치(벽, 바닥, 강화유리창 등)
- 이용자 개인사물함 또는 프로그램용 물품 수납공간 별도 마련
- 성인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휠체어, 워커 등의 보장구 구비
- 조명은 밝게 하되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출입구나 복도는 넓게 계획함

-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타 사업의 프로그램실과 겸용 불가능
 - 심신안정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여야 함
 - 바닥 및 벽면에는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를 권장함
 - 행동관찰을 위한 분리된 관찰실 혹은 투명창 설치를 권장함
 -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함

참고 다감각 교구 활용

- 청각자극: 천정형 스피커 설치, 개인용 음향물품 등
- 시각자극: 외부 광원 차단을 위한 암막커튼, 천정형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실내조명 등
- 촉각자극: 촉각자극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위한 마루형·벽면형 촉각 물품 등

- (사무실)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야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는 겸용 가능
 -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4) 시설 안전

-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
- 반드시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cctv 설치의 목적과 촬영장소 등을 안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

-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
 -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주간 개별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함
- 주간 개별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 제공기관은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다 주간 개별 제공기관 인력기준

1) 인력기준

- 주간 개별 제공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자격요건

●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택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6) 「장애이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통합돌봄서비스 사업관리자와 제공인력은 상근하여야 함
 -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배치된 주간 개별형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대 1 매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3)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특정 연령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자료 활용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화가 어려운 기관은 범죄사실부존재확인서[서식 39호] 대체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화가 어려운 기관은 범죄사실부존재확인서[서식 39호] 대체 가능